

인천지방법원 2022. 5. 4 선고 2021가단141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4. 27.

판 결 선 고 2022. 5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2. 7.부터 2021. 11. 23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지영

별지